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**변경 사항** :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추가

□ **효력 발생일 :** 2024. 8. 7.

□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**2024. 6. 28. 기준**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4. 6. 30. 기준**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〈신 설〉 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〈신 설〉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 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**2024.08.07** **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사채)** 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**2023.06.23** **- 자투자신탁 추가(트러스톤중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])** **2024.08.07** **- 환매일정 변경 : 2(3)영업일 기준가로 4(4)영업일에 지급 → 3(4)영업일 기준가로 3(4)영업일에 지급** **- 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사채, 기업어음증권)**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4. 6. 30. 기준**

가. 운용전문인력			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4. 6. 30. 기준**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년 경과 내역 삭제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책임운용역 : 신홍섭 (2020.01.09~2020.07.21)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**〈삭 제〉**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	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채권) 및 기재 명확화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1) 채권 : 사채권(신용평가등급 A-이상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1) 채권 : 사채권(**취득시** 신용평가등급 A-이상**(전자증권법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)**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
	환매조건부 매수 삭제 및 번호 정정	7) 환매조건부 매수 8)(생 략) 9) (생 략) 10) (생 략) 11) (생 략)	**〈삭 제〉** **7)** (현행과 같음) **8)** (현행과 같음) **9)** (현행과 같음) **10)** (현행과 같음)
	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및 번호 정정	〈신 설〉	**▶ 환매조건부 매수**
	번호 정정	12) (생 략)	**11)** (현행과 같음)
	기재 정정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생 략)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**8)**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생 략)

	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채권) 및 기재 명확화	-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1) 채권 : 사채권(신용평가등급 A-이상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	-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1) 채권 : 사채권(**취득시** 신용평가등급 A-이상**(전자증권법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)**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
	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추가(기업어음증권)	3) 양도성예금증서 〈신 설〉	3) **어음** **▶ 기업어음증권(신용평가등급 A2 이상,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** **▶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(신용평가등급 A2 이상)** **▶ 양도성 예금증서**
	환매조건부 매수 삭제 및 번호 정정	7) 환매조건부 매수	**〈삭 제〉**
		8) (생 략)	**7)** (현행과 같음)
		9) (생 략)	**8)** (현행과 같음)
		10) (생 략)	**9)** (현행과 같음)
	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및 번호 정정	11) (생 략) 〈신 설〉	**10)** (현행과 같음) **▶ 환매조건부 매수**
	번호 정정	12) (생 략)	**11)** (현행과 같음)
	기재 정정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생 략)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**8)**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생 략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기재 정정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

나. 투자제한		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, 트러스톤 중기채권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-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기 대출	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, 트러스톤 중기채권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- **법 제83조제4항**에 따른 단기 대출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추가 번호 정정	1) 투자전략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] □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/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〈신 설〉 (3) (생 략)	1) 투자전략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] □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/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**(3) 크레딧 전략** **(4)** (현행과 같음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**2024. 6. 28. 기준**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 회사연혁 추가	- 〈신 설〉	**2024. 6. 30. 기준** **2022.11 종합자산운용사 전환**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**2024. 6. 30. 기준**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(신탁업자)	신탁업자 정보 업데이트	주소 및 연락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5 (02-2002-1111) 연혁 :〈신 설〉	주소 및 연락처 : **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(을지로 1 가) (1599-1111)** 연혁 :**1971년 6월 설립, 2015년 9월 외환은행 합병**